

	법익·개인적 법익 침해 · 시정권고의 필요성 · 피해자 이외 제3자의 신청도 가능	고소위원회의 결정	고와 그 내용의 외부공표 및 언론사의 시정
형사처벌	· 범죄구성요건해당성 · 고의·과실과 위법성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	· 법원의 형사소송절차	형벌

2. 언론중재 관련법의 연혁

- 1980. 12. 31. 언론기본법 제정, 정정보도청구권(사실은 ‘반론보도청구권’ 임) 도입
- 1981. 3. 31. 언론중재위원회 제도 도입
- 1987. 11. 28. 언론기본법이 폐지됨과 더불어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명칭 및 골격이 유지된 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분리 수용
- 1991. 12. 31.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종합유선방송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
- 1995. 12. 3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정식 명칭 채택
- 2005. 1. 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언론피해구제제도 통합

3.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1) 언론의 자유와 책무의 명확화

언론의 자유와 독립(언론중재법 제3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동법 제4조)이 명정되어 있으며, 특히 인격권(사망자의 인격권 포함) 보호의무(동법 제5조)가 강조되고 있다.

(2) 적용대상 범위의 다양화

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뿐 아니라 인터넷신문으로까지 다양화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2조 1호).

(3) 자율적 예방활동의 강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6조).

(4)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등 보장

언론피해 조정·중재 등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고 그 국가사회적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독립 설치한다.

위원회의 정체는 다음과 같다.

- ㄱ. 독립성 :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고, 직무상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함(언론중재법 제8조 1항)
- ㄴ. 중립성 : 공무원 · 정당원 · 현직언론인 · 선거후보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음(언론중재법 제8조 2항)
- ㄷ. 전문성 : 중재위원으로 법관 · 변호사 · 전직언론인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해야 함(언론중재법 제7조 3항)
- ㄹ. 공정성 :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 중재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제도 인정(언론중재법 제10조)
- ㅁ. 민주성 : 중재부의 결정은 다수결에 의함(언론중재법 제9조 2항)
- ㅂ. 능률성 : 사건별 중재 · 조정은 중재부에서 담당(언론중재법 제9조), 중재부의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과 증거조사권 인정(동법 제20조), 위원회 사무지원을 위한 사무처 설치(동법 제11조)
- ㅅ. 자율성 : 중재부 구성, 위원회 규칙 제정 등 권한을 위원회가 보유(언론중재법 제7조 2항)

(5) 피해구제 절차(형식)의 다양화

언론피해구제의 형식인 절차가 언론사에 대한 직접 청구 절차와 더불어 조정 · 중재 · 소송 · 시정권고로 다양화되어 있다.

① 조정

조정은 중재부에서 중재위원이 쌍방 당사자에게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관해 설명하고 자율 평가와 의사결단을 위해 조언하며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당사자가 스스로 피해구제방안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언론중재법 제19조 5항).

조정절차는 피해자 또는 언론사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동법 제18조 1항).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 종결된다. 즉,

- ㄱ. 당사자간의 합의
- ㄴ. 합의간주(언론중재법 제19조 3항, 피신청인의 2회 불출석의 경우)
- ㄷ. 조정불성립결정(언론중재법 제21조 3항,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ㄹ. 직권조정결정(언론중재법 제22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 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은 무효로 되고, 다만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됨)
- ㅁ. 각하(언론중재법 제21조 1항,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 ㅂ. 기각(언론중재법 제21조 2항,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 ㅅ. 신청인의 취하
- ㅇ. 신청인의 취하 간주(언론중재법 제19조 3항, 신청인의 2회 불출석의 경우)

조정결과 합의, 합의간주, 이의 없는 직권조정결정이 성립하면,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다.

② 중재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미리 합의하여 중재부가 정하는 중국적 해결방안에 복종하기로 하고, 그 방안 제시 즉 중재를 중재부에 신청한 경우(언론중재법 제24조), 중재부가 행하는 분쟁해결절차이다. 중재는 당사자의 사전합의에 기초를 두는 것인 만큼, 그 결론은 강제력을 갖는다. 또한 이 절차는 당연히 단심제로 된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동법 제25조).

③ 소송

피해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법원에 소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청구에 대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판한다(언론중재법 제26조). 그리고 이 소송은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원고의 정정·반론·추후 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동법 제28조).

한편 피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 인격권 침해의 정지 및 침해예방, 인격권 침해관련물의 폐기 등을 소구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또한 피해자는 법원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하여 소구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이러한 언론피해를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행하여야 한다(동법 제29조).

④ 시정권고

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문제의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32조 1항). 이러한 시정권고의 절차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개시된다(동법 제32조 2항). 본법의 이 규정은 중재위원회 자신의 직권적 결정에 의해서도 심의 개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정권고소위원회」가 담당한다(동법 제7조 2항 4호, 시행령 제17조).

(6) 피해구제 방안(내용)의 다양화

언론피해구제의 내용인 방안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① 정정보도

정정보도는 언론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음 즉 허위인 경우에 이를 진실에 부합되도록 고쳐서 다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언론중재법 제2조 15호).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동법 제14조 제2항). 즉 피해자의 이 요건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피해자’(언론사에 대하여는 ‘청구인’, 중재위에 대해서는 ‘신청인’, 소송상 법원에 대해서는 ‘원

고'로 지칭됨)는 언론사에 대하여 먼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14조 제1항), 그 후 언론사와의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에 또는 언론사에 대한 청구없이 바로 정정보도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24조, 제26조).

정정보도의 청구, 이에 관한 조정·중재의 신청 및 소의 제기는 문제의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언론보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동법 제14조 1항, 제18조 3항, 제24조 3항, 제26조 3항).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조정·중재는 그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19조 2항, 제24조 3항),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1항).

② 반론보도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언론중재법 제2조 16호). 반론보도청구에도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동법 제16조 2항). 그러므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입증의 필요없다. 반론보도와 관련한 청구·신청·제소에 관해서도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16조 3항).

③ 추후보도

추후보도는 언론에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되었으나, 그 후 형사 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그와 같은 형태로 종결된 경우, 그 결과 사실을 후속보도하는 것을 말한다(언론중재법 제17조 1항). 그리고 이 후속보도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동법 제17조 2항). 추후보도와 관련한 청구·신청·제소에 관해서도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17조 3항).

④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것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고(언론중재법 제30조 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언론중재법 제18조 2항, 제24조 1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30조 2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손해배상청구에는, 당연하지만 일반론에서와 같이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요구된다(언론중재법 제30조 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손해배상청구는 정정보도청구 등과 별도로 또는 병합하여 행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8조 6항). 법원은 언론피해를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는데(동법 제29조), 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⑤ 인격권침해 정지 및 침해예방, 관련물 폐기

언론의 고의·과실이 있는 위법행위로 인해 인격권 침해를 받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고 권리침해의 우려가 명백한 자에게 침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

으며(언론중재법 제30조 3항), 이와 더불어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기타 필요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4항).

⑥ 명예회복처분

명예회복처분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사과광고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용태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이를 재판을 통해 명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31조, 민법 제764조). 이러한 처분 중 정정보도 방식의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론사의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언론중재법 제31조).

⑦ 시정권고

시정권고는 언론보도 내용이 옳지 못한 것 혹은 잘못된 것, 즉 국익·공익·사익을 침해한 것을 심의하여 고쳐 바로잡을 것, 즉 시정할 것을 권함을 말한다. 심의결과와 권고처분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는 말 그대로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어떤 강제성도 갖지 않는 처분이다(언론중재법 제32조 4항). 그러므로 시정 여부는 당해 언론사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진다. 다만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내용을 언론사별로 외부에 공표할 수 있어서(동법 제32조 5항), 현실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일정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32조 3항),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2조 9항).

4. 현행법의 쟁점

(1) 타당성 및 합헌성 논쟁

현행법은 그 제정예고 내지 법안 공표 당시부터 매우 격렬한 시비논쟁의 표적이 되었다. 제도의 다양한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요소에 관한 학계·언론계·시민사회 내부의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논쟁은 급기야 언론사측의 헌법소원과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발전하여, 현하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현행법의 일부 위헌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급진적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언론과 여론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간섭을 체계화하고 국가의 언론 통제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거나, “신문법·언론중재법은 동아일보·조선일보 등 보수 일간지를 겨냥해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제정된 반(反)언론적인 위헌 입법이다”라고 한다.

한편 이 법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감시·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사는 특별한 보호와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상응하는 제한도 수용해야 한다. 신문법·언론중재법은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최소한의 제한이다”라고 한다.²⁾

아래에 이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심사 공개변론에서 거론된 주요쟁점별 주장내용을 나누어 표로써 비교해 보겠다. (이하 조선일보 2006. 4. 7.자 A5면에서 인용).

2) 조선일보 2006. 4. 7. 자 A1면